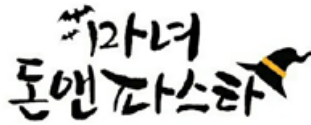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witchstable.co.kr				
전자우편	btcorp00@gmail.com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70489	최초 등록일	2017.04.10	최종 등록일	2024.08.12



정보 공개서

[마녀식탁]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 에게 '정보 공개서'를 드립니다.

20

[마녀식탁]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 표 번 호	1 6 7 0 - 0 9 6 0	팩 스 번 호	0504-363-5049
가 맹 사 업 부 서	영 업 부	전 화 번 호	1 6 7 0 - 0 9 6 0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422 107-302 호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현황
3.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의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사업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8.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9. 직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10. 가맹금 예치기관
11.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가맹사업 “마녀돈앤파스타”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당사와 “마녀돈앤파스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I.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마녀식탁	마녀돈앤파스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422 107 - 302 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자	전화번호/Fax
	개인사업자	2016.01.20.	조병태	1670-0960 0504-363-5049
	법인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247-56-00095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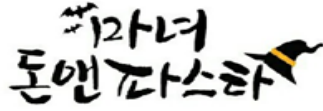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3.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정보공개서 직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마녀돈앤파스타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호	영업표지	추가 설명
마녀돈앤파스타	마녀돈앤파스타 00 점 (해당 지역 명 표기)		

5. 가맹본부의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바로 전 3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VAT 미포함)

연도 / 구분	2021	2022	2023
매출액	37,044	13,645	32,366

2) 당사의 바로 전 3 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조병태	대표	2021.08.06 ~ 현재	마녀돈앤파스타	경영총괄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①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의 관련 당사는 지식재산권 [마녀돈앤파스타]관련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II.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마녀돈앤파스타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17.03.01** 입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6년 9월 15일)

2. 마녀돈앤파스타 연혁

당사의 마녀돈앤파스타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비고
마녀녀탁	마녀돈앤파스타	장아연	2017.03.01~2021.08.0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422 107 302 호	
마녀식탁	마녀돈앤파스타	조병태	2021.08.06 ~ 현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422 107 302 호	

3. 마녀돈앤파스타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마녀돈앤파스타	패스트푸드	돈까스 및 파스타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마녀돈앤파스타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마녀돈앤파스타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3	3	-	3	3	-	2	2	-
서울	-	-	-	-	-	-	-	-	-
인천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3	3	-	3	3	-	2	2	-
충남				-	-	-	-	-	-
전북				-	-	-	-	-	-
전남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제주				-	-	-	-	-	-
세종				-	-	-	-	-	-

5.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마녀돈앤파스타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직전 3 개 사업연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 변경한 가맹점 수는 2023 년도 신규개점 **0 점포**, 계약종료 **1 점포**, 계약해지 **0 점포**입니다.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7	1	2	13	0	3
2022	3	0	0	0	0	3
2023	3	0	1	0	0	2

6. 기타 가맹사업현황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 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③.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							
서울	0	-	-	-	-	-	-	
인천	0	-	-	-	-	-	-	
경기도	0	-	-	-	-	-	-	
경북	0	-	-	-	-	-	-	
경남	0	-	-	-	-	-	-	
충북	2	-	-	-	-	-	-	
대전	0	-	-	-	-	-	-	
충남	0	-	-	-	-	-	-	
부산	0	-	-	-	-	-	-	
전남	0	-	-	-	-	-	-	
대구	0	-	-	-	-	-	-	
광주	0	-	-	-	-	-	-	
세종	0	-	-	-	-	-	-	
제주	0	-	-	-	-	-	-	
울산	0	-	-	-	-	-	-	
강원	0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매출보고금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2023년 이후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이 대부분인 관계로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 기재한 전체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3 항·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마녀돈앤파스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년	2	1,652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현황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지역본부는 없습니다.

10. 직전 사업 년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 년도의 당사의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연간 광고 및 판촉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KEB하나은행	청주지웰시티지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7-2	043-212-5100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하나은행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시거나, 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맹금 예치제'를 클릭하시면 가맹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자세한 예치방법은 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1599-1111/043-222-1111)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인테리어비용, 주방집기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 천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영업 지역권) 2. 선정 점포 실사의 대가 3. 최초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인력지원의 대가 4. 오픈 시 제공되는 가맹점 운영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5,500	각 채무 이행 시작 후 반환 안되며 가맹점 개점 이후 모두 반환 안됨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각 채무 이행 시작 또는 개점 후 반환 될 수 없음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5,500	교육개시 전 해지	교육이수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소멸성)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 천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 가맹비	1. 개점 전 교육비 2.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인력지원의 대가 3. 양수 시 제공되는 가맹점 운영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4. 홍보지원비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비율 부담	각 채무 이행 시작 후 반환 안되며 양수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양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각 채무 이행 시작 또는 개점 후 반환 될 수 없음

나.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 삼백만 원(W3,000,000 원 VAT 없음)은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VAT 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14,000	5,500
가맹비	5,500	-
교육비	5,500	5,500
보증금	3,000	이전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품목	지급대상	금액 (단위: 33 m ² , 천원, VAT 포함)	면적 3.3m ²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내역
인테리어	점주자율	-	-	가맹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당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 는 반환될	
간판	(협력업체)	3,300	330			
초도 물품	가맹본부	3,300	330			별첨1참조

집기	점주자율	-	-	수 없음	
비품	점주자율	-	-		
오픈 행사비용	점주자율	-	-		
합계		6,600	660		
별도금액	자체조달 및 가맹본부	내 ·외부인테리어, 주방집기, ·냉난방기, 철거, 화장실, 계단 및 복도, 외부소방, 테라스, 전기 증설, 가스공사, 하수도공사, 닥트시공, 음향오디오, 탁자 의자, 조리대 외 추가 등			매장 상황 및 점주 선택에 따라 변동가능 금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매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간판은 간판 전면기준(간판, 파사드 3m*1m/한 면)이며 매장 규모에 따라 실측 후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의 승인 하에 인테리어를 귀하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 귀하는 당사가 파견하는 직원의 설계 및 감리(관리감독)의 대가로 당사에 3.3㎡당 55만원(부가세포함)의 검수비용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에 추가 지급하셔야 합니다.



마. 점포크기 별 예상 견적

귀하가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사업 시작을 위하여 필요한 점포크기 별 예상 견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VAT 포함)

구분	33㎡ 기준 금액(약 10평)	면적3.3㎡	지급기한	반환조건
가맹비	5,500	550	가맹계약 후 3일 이내 입금	이행 전 소요비용 반환
교육비	5,500	550		
계약이행보증금	3,000	300		
인테리어	-	-	가맹계약 시 개별계약	미 공급 시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간판	3,300	330		
집기	-	-		
비품	-	-		
초도 물품	3,300	330		
오픈 행사	-	-		

합계	20,600	2,060	-
-----------	---------------	--------------	----------

*내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여건에 따라 추가되는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바.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 (단위: 천원/VAT 포함)		지급시기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예치 가맹금 (계약금)	14,000	5,500	계약체결 시
중도금	-	-	상호 협의
잔금	-	-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전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2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개점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70%

아.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p>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p> <p>※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p>

자.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및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실형을 받은 전과 사실이 없을 것 만 19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차.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및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카.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	잔금
금액(천원)	1,400	총액의 30%	30%	30%		1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15 일	계약일+1 월		계약일+2 월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개점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지급 대상자	금 액(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월 계속 가맹금	가맹 본부	지난달 매출산정 1% (VAT별도)	매달 10일	반환 안됨
	수시교육,	가맹 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개점 이후 교육비	특별교육	가맹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공동판촉 관련비용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 참고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본부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점포 환경 개선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분담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VII-1 참고
지연이자	지연이자	당사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 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1 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 회	문의: 본사 (1670-0960)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반기별 1 회	문의: 본사 (1670-0960)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없음				
추가 교육비 ^④	없음				
점포 이전비 ^⑤	없음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 (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추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라.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마녀돈앤파스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품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요구/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마녀돈앤파스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②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그에 대한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마녀돈앤파스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에서 허락하지 않은 상품·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합니다. .

4. 영업지역

가.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돈까스, 파스타, 도시락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마녀돈앤파스타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반경 250m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마녀돈앤파스타]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0%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가. 가맹계약기간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갱신 시에는 1년씩 연장 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⑤ +15일 이내
⑥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⑦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⑧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⑨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조 2항 각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2 항 및 3 항	25 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각호 및 31 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1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15 조	1 호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 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 조 1 항 및 2 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 조 2 항~4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 조 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9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 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전매입 하거나 품질검사에 2 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 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 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27 조 2 항 및 3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 조 2~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품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 조 1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5 조 20 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 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p>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p> <p>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p> <p>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p>	31조 4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5) 그밖에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 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부서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①	가능 여부(조건) ^②	이전 범위 ^③	절차 ^④	기타 의무사항 ^⑤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금지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마녀돈앤파스타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녀돈앤파스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일반인에게 돈까스 및 파스타, 도시락을 판매하는 업종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마녀돈앤파스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오전11시부터 22시 단, 변경 시 당사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월 최대 4일 이내 휴무 외 영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자전매입 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수시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50% / 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결정 →가맹본부 금액 통지(광고1개월 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판촉	공동판촉	50%	50%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개별판촉	-	100%	

*브랜드 및 상품광고의 경우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판촉행사 동의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이 가능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금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 제 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금으로 금 삼천만 원(₩30,000,000 원)을 지급 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귀하가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물품에 대하여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전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금으로 금 오백만 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품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 일 금 삼십만 원(₩300,000 원)씩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약벌금으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위약벌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 또는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4항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37조 제1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용비용
합계		40 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D-40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이전 부담 바. 금전지급 방법 참조
사업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2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출	D-25~23	
가맹계약 체결	- 계약체결	D-22	
가맹금 예치	- 은행에 가맹금 입금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1~19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18	
인테리어 공사 비품구입 초도 물품 공급	- 인테리어 공사 실시 등	D-17~3	
교육 실시	- 점포운영 등 교육실시	D-14~3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상기 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 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 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	------------------	------	--------------

<p>*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p> <p>*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p>	<p>*간판교체비용</p> <p>*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 및 집기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p>	<p>*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p> <p>*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p>	<p>○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p> <p>○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p> <p><분할지급 시 절차></p> <p>○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 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p>	<p>*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p>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비용분담 등에 대한 기준을 두었으나 현재 판매촉진에 관한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 행사비용	해당사항 없음	-			
판촉장려금	해당사항 없음	-			
판촉지원	개점 이벤트 현수막 제공				
	개점 이벤트 풍선 제공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사항 없음	-			
반품지원	해당사항 없음	-			
마일리지	해당사항 없음	-			
CRM	해당사항 없음	-			
테스터	해당사항 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 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 사업부 (1670- 0960)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 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 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 사업부 (1670- 0960)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내용 ^④	비고 ^⑤
매출부진 경영지원	가맹점 오픈시 할인쿠폰 및 어플이용료 지원	매출액 1500 만원 미만시	오픈일로부터 3개월간	배달의민족 1000 원 쿠폰, 울트라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마녀돈앤파스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타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운영, 상품 교육	실습교육		

신규교육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가맹계약체결 후 1개월이내	필수교육
------	----------------	--	-------------------	------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마녀돈앤파스타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 강의	개별협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개점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개점 전 교육	14일	5,0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사항은 실비청구	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2 회 이상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1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0년 0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1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000,00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시키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부(1670-096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초도물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아너
동앤조스타

별첨2 거래 물품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아너
동앤조스타

별첨3 간판 사인물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와녀
돈앤스타

별첨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와너
돈앤조스타

별첨5 가맹금 예치 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점사업자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